

# 아동안전보호정책

개정 2019. 6. 19.

시행 2019. 6. 26.

개정 2022. 2. 9.

시행 2022. 2. 14.

## 제 1 장 총 칙

### 제1조(아동의 권리)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여러 지역 및 국제 협약, 특히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의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을 상대로 한 학대와 성 착취가 여전히 전세계 모든 국가와 사회, 문화권에서 일어나고 있다. 모든 아동학대와 성 착취는 아동의 권리를 유린하는 것이며 용납될 수 없다.

### 제2조(무관용 원칙)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이하 “법인”이라 한다)와 같이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NGO를 대표하는 사람들과 인도적지원활동가들은 활동지역 주민들로부터 특별한 신임을 받고 있다. 이러한 신임을 악용하여 아동안전보호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삶에 오랜 기간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이며 법인에 대한 신뢰와 평판도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법인은 직원과 협력기관, 우리를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한 아동학대와 아동 대상의 성 착취를 용납하지 않는 무관용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 제3조(목적)

아동권리에 대한 우리의 약속에 따라 우리는 아동, 특히 우리와 함께 활동하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을 약속한다. “아동안전보호정책”(이하 “정책”이라 한다)은 법인이 긴급구호, 인도적지원, 국제개발, 정책수립과 캠페인 활동 등의 일상적인 모든 업무 수행에 있어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이 되기 위해 합당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 제4조(역할)

우리와 함께 활동하는 아동이 존중 받고 모든 유형의 학대와 성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인은 본 정책을 적용하고 이행 모니터링을 위해 요구되는 기준을 제시한다.

#### 제5조(아동에 대한 약속)

아동권리 실현을 위해 범세계적 활동을 펼치는 기관과 그 구성원으로서 법인은 아동과 함께 활동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 아동에 대한 약속 (Commitment to Children)

- 인식: 우리는 모든 직원, 협력기관과 기관을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동학대 및 성 착취의 문제와 그것이 아동에게 미치는 위험성에 대해 높은 의식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아동과 그 가족에게 기관을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행동 기준과 문제점을 알리거나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 예방: 우리는 아동안전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과 모범적인 실천을 통해 직원과 기관을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동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관리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은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학대와 아동 성 착취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 보고: 우리는 직원과 기관을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동학대 또는 아동 착취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취해야 할 조치를 명확히 제시할 것입니다.
- 대응: 우리는 아동학대와 아동 착취 가능성의 우려가 있을 때 아동 최선의 이익에 기반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 보장을 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 제6조(근거)

본 정책은 “세이프더치ildren 연맹”(SCA)의 이사회에 의해 채택된 “글로벌 아동안전보호규약”(Global Child Safeguarding Protocol, 2018년 10월 채택)에 기반하여 마련되었으며, “글로벌 아동안전보호규약”에 명시된 모든 기준과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 제7조(담당)

사무총장은 본 정책의 이행 책임자로, 정책의 이행을 지원할 아동안전보호정책 총괄담당자를 지정한다.

## 제 2 장 정의 및 범위

### 제8조(아동의 정의)

본 정책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 제9조(적용 조직)

본 정책의 적용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의 본부 및 지역본부
2. 법인의 산하시설

### 제10조(적용 대상자)

본 정책은 아동에 초점을 맞추며 아동과 활동하는 모든 사람에게 아동안전보호에 대한 최상의 기준을 요구한다.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 및 산하시설의 모든 직원 (국내, 해외의 근무지와 관계없이 정규직,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 등 모두 포함) (이하 “직원”)
2. 법인 및 산하시설의 임원, 명예임원, 고문, 자문위원, 자원봉사자 (이하 “기관을 대표하는 관련자”)
3. 협력기관을 대표하는 관련자와 직원, 법인과 공식관계 혹은 협약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 그룹 혹은 기관 (협력기관의 아동보호정책을 적용하기로 공식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 (이하 “협력기관 직원”)
4. 아동을 만나기 위해 법인의 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방문하는 후원자, 언론인, 홍보대사, 정치인 등 모든 사람

### 제11조(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는 개인, 기관 혹은 절차 등으로 인하여 아동이 직간접적으로 해를 입거나 성인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을 해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는 아동과의 직접적인 접촉, 온라인상의 접촉 또는 아동에 대한 지식 부족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

### 제12조(아동학대의 분류)

본 정책에서는 아동학대를 성학대,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및 착취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며, 기타 하위 범주가 추가될 수 있다.

## 제 3 장 이 행 과 점 검

### 제13조(정기점검)

“글로벌 아동안전보호규약”의 점검 주기에 따라 매 3년마다 본 정책을 검토하고 해당 과정에 아동의 의견을 반영한다.

#### 제14조(이행사항)

본 정책은 기관운영, 사업기획과 실행, 정책위반사항 보고와 사례관리 절차 등 모든 측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보고 절차에 아동안전보호 의심 사례의 확인, 보고 및 대응 절차를 명시하며, 행동강령에는 아동을 대함에 있어 허용되는 행동과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일련의 행동을 명시한다.

### 제 4 장 인 식 과 예 방 에 관 한 기 준

#### 제15조(확산과 인식 제고)

- ① 법인은 본 정책, 행동강령 및 보고절차를 널리 전파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과 그 보호자, 직원, 기관을 대표하는 관련자, 협력기관 직원과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알린다.
- ② 법인은 법인과 함께 활동하면서 사업 혹은 서비스를 통해 혜택을 받고 있는 아동과 기타 관계자에게 본 정책, 행동강령 및 보고절차를 명확히 알린다. 이를 위해 한국어로 제작된 자료, 그림 등의 시각자료를 활용한 자료 혹은 아동친화적인 자료 등을 제공한다.
- ③ 법인은 아동과 그 보호자에게 법인 및 그 산하시설의 직원, 협력기관 또는 기관을 대표하는 관련자의 행동에 있어 발견한 문제점을 알리거나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알려준다.
- ④ 법인은 아동을 직접 만나기 위해 법인 및 그 산하시설의 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방문하는 후원자, 언론인, 홍보대사, 정치인 등 모든 사람에게 방문기간 동안 지켜야 하는 본 정책을 알려준다.

#### 제16조(채용과 선발)

- ① 법인은 직원과 기관을 대표하는 관련자의 채용과 선발 과정에 법인의 “아동안전보호에 대한 약속”을 반영한다. 국내법의 허용 범위내의 가장 철저한 범죄경력조회, 공식절차를 통한 이전 근무지 평판조회, 아동과 함께 일함에 있어 적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엄격한 채용 면접 등을 포함하는 강력하고 안전한 채용 절차를 적용한다.
- ② 채용예정자는 근무 개시 전, 법인의 본 정책과 행동강령, 보고절차의 준수를 약속하는 이행 약속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본 정책과 행동강령, 보고 의무가 갖는 구속력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국내법이 특별히 금지하지 않는 한 본 정책과 행동강령은 업무뿐만 아니라 사생활에서도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 ③ 법인은 아동에게 안전한 사람만이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본 정책 위반 관련 정보를 세이브더칠드런 인터내셔널과 각 회원국에게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국내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아동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법인 또는 그 산하시설에 채용되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

를 공유해야 하는 의무를 포함한다.

#### 제17조(관리제도 및 절차에 아동안전보호정책 도입)

- ① 아동을 위한 법인의 모든 활동 혹은 서비스는 아동안전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본 정책의 원칙과 기준을 반드시 반영한다.
- ② 사무총장은 “아동안전보호체계보고서(Child Safeguarding Framework Statement)”를 매년 작성하여 승인한다. 해당 보고서에는 국내법과 제도상 학대 피해자(혹은 생존자) 보호와 지원 체계, 아동학대를 범죄로 규정하는 범위와 유형에 따른 개요, 아동학대 관련 법 집행과 보건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과 효과에 대한 평가, 범죄경력조회 가능 여부, 아동학대와 기타 아동안전보호 관련 정보에 대한 신고의무 법제화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한다. 아동안전보호체계보고서는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조치시 피해(의심)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내법, 관습, 규범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작성한다.
- ③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인의 모든 제도와 활동에 본 정책을 반영하고 새로운 제도와 절차를 도입할 경우에도 본 정책을 반드시 포함한다. 이를 통해 아동 권리가 존중되고 성 착취를 포함한 아동학대가 용납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 ④ 업무 정의와 수행 절차, 자격요건을 포함한 직무기술서, 행동강령, 인사평가와 징계 등 모든 인사제도에 본 정책을 반영한다. 만약 인사제도에 반영되어 있는 아동안전보호사항이 준수되지 못한 경우 이는 중대한 규정 위반으로 다루어진다.
- ⑤ 재무, 총무, IT 등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은 각 직무에서 요구되는 아동안전보호의 책무를 상세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업, 캠페인, 옹호와 기관 운영 등이 아동에게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든 상황에서 아동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 ⑥ 본 정책 이행에 필요한 예산은 사업계획, 예산 계획과 사업제안서에 반영한다.

#### 제18조(위험 진단과 관리)

- ① 협력기관을 포함한 법인 및 산하시설의 모든 활동에 “안전한 사업(Safer Programming)” 원칙을 반영한다. 아동참여활동, 인도적지원, 신규사업발굴과 기획, 실행, 사업운영 및 캠페인 활동, 정책개선활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모든 활동에서 아동안전보호를 위협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완화 방안과 적절한 통제 방법을 마련한다.
- ② 모든 활동은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참여하여 보호받을 수 있고,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사전에 가능한 위험과 대안을 평가한다. 이는 아동의 역량, 인종, 부족, 종교, 언어, 성별의 차이, 성 소수자(LGBTI+)인 아동, 그리고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학적 또는 신체적 조건을 가진 아동 등의 안전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사전에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요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상의 상황 외에 대해서도 아동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검토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아동의 참여와 욕구를 반영한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의 틀에서도 상기 사항을 포함

한다.

- ③ 법인 및 산하시설과 협력기관은 모든 아동이 각자의 역량과 관계없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기획과 실행에 서로 다른 역량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아동과 그 가족,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한다.
- ④ 재무, 총무, IT 담당자 혹은 아동보호, 교육, 보건 분야 전문가(Thematic Specialist)가 모든 활동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전 과정에 적절히 참여하여 각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안전보호에 대한 평가와 학습을 통하여 사업과 인도적지원활동에서 아동안전보호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 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아동과 접촉하는 활동을 함에 있어 아동안전보호를 위협하는 모든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완화 및 적절한 통제 방안이 마련되었는지 평가한다. 해당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틀의 설계에도 이를 반영한다.
- ⑥ 마케팅, 언론홍보 및 옹호 활동에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이 참여하는 경우, 해당 활동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여 참여 동의를 득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 또한, 해당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동과 그 보호자를 착취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며, 취약성을 높이거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 ⑦ 언론홍보, 옹호 활동 및 기타 목적으로 아동 생활에 대한 세부 정보나 관련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아동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나 사진을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아동의 실명, 거주지 정보와 아동을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이 담긴 사진을 동시에 노출하지 않는다.
- ⑧ 위험을 관리할 때는 모금, 마케팅, 언론홍보 및 옹호 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아동의 참여가 한정되거나 제한되지 않도록 한다.

#### 제19조(교육 및 계발)

- ① 법인은 모든 직원, 기관을 대표하는 관련자, 협력기관 직원 등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동안전보호 교육을 제공한다. 본 정책의 세부내용과 아동권리 준수, 아동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과 발견 방법, 아동학대 혐의 혹은 의심 정황을 보고할 수 있는 조직 문화 활성화에 관한 지침을 본 정책의 교육에 포함한다. 또한, 본 정책의 교육은 아동에게 해로운 행동이 묵인되지 않도록 사업 현장의(혹은 지역사회의) 환경과 문화에 대한 감수성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 ② 성 착취를 포함한 아동학대사건 대응 및 조사 업무 담당자는 사건 대응과 조사 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당 교육은 지역사회의 문화와 언어의 차이를 반영한다.
- ③ 직원과 기관을 대표하는 모든 관련자는 업무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본 정책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대면 교육을 이수한다. 아동안전보호 교육은 최소 매 1년마다 재교육을 하며, 교육 참석자 정보를 정기적으로 본부 아동안전보호정책 총괄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정책 준수와 이행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제20조(협력기관)

- ① 협력기관과의 모든 협약서에 아동안전보호에 대한 약속을 포함한다. 협력기관이 자체 아동안전보호정책을 적용할 경우, 협력기관의 아동안전보호정책은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과 아동권리보호에 있어 본 정책과 동등하거나 더 높은 기준이어야 한다.
- ② 협력기관과의 협약서에는 법인의(또는 협력기관의) 본 정책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한 보고와 조사를 위한 절차를 명확히 기술한다. 협력기관은 본 정책 위반사항을 법인에 보고할 분명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한다.
- ③ 법인은 협력기관이 자체 아동안전보호정책과 기준을 개발해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아동안전보호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지원을 통해 협력기관이 강력한 아동안전보호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제21조(정보통신기술)

- ① 아동을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웹 사이트, 사회관계망 사이트를 포함한 정보통신기술의 사용과 디지털 사진 사용에 관한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한다.
- ② 사무총장은 방화벽 및/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해 모든 법인 및 그 산하시설의 정보통신시스템이 아동을 형상화한 음란물과 아동이 실제 출연하는 성표현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

## 제22조(감사와 검토)

- ① 이사회는 본 정책 준수를 위한 감사 체계를 마련하고 합의된 기한 내에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방안을 수립한다.
- ② 사무총장은 본 정책 위반 혹은 의심 정황에 대해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고 조치 사항 결정을 위해 아동안전보호위원회를 구성한다.
- ③ 본 정책 이행 점검과 감사 과정에 아동과 보호자의 의견을 듣는다.

# 제 5 장 보고와 대응에 관한 기준

## 제23조(전사 차원의 보고와 대응)

- ① 본 정책 위반 혹은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기록과 대응을 위해 보고 절차를 마련한다. 보고 절차에 따라 각 지역본부와 시설은 본부에 보고하고, 본부의 아동안전보호정책 총괄담당자는 아동안전보호위원회와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 ② 내부신고자보호절차를 마련하여 직원과 기관을 대표하는 관련자에게 알린다. 내부신고자 보호절차는 본 정책의 위반 의심 정황 혹은 확인된 본 정책 위반 사항을 보고하거나, 선의로 본 정책의 위반을 눈감아 주거나 정책에 타협한 상황을 보고한 개인이 피해를 입거나 보복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 ③ 본 정책 위반 혹은 의심 정황을 보고하고 주요 정보를 기록할 신고접수 표준 서식을 마련하고, 모든 직원, 기관을 대표하는 모든 관련자와 협력기관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 교육 등 가능한 지원을 제공한다.

**제24조(사건발생시 보고 절차)**

- ① 사건 발생시 보고 절차는 사건 내용, 발생(혹은 발견) 경위, 발생 시점, 보고자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마련한다. 보고 절차에는 보고에 대한 명확한 책무 및 외부에 본 정책 위반 혹은 의심 정황에 대한 보고 시점과 보고 방법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아동안전보호체계보고서에 포함된 보고 절차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 ② 보고 절차는 모든 수혜자와 가족, 지역사회, 직원, 기관을 대표하는 관련자 및 협력기관 직원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알린다.
- ③ 모든 직원과 기관을 대표하는 관련자는 본 정책 위반 혹은 의심 정황에 대해 불가능한 상황 혹은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면 인지 후 24시간 이내에 보고 절차에 따라 보고한다.
- ④ 본 정책을 손상시키거나 위배했다는 확신을 가진 직원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는 고충처리, 핫라인의 내부고발절차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제25조(아동안전보호정책 이행을 위한 역할과 책임)**

- ① 법인의 사무총장, **부문장**, 팀장, 지역**본부장**과 그 산하시설의 장은 본 정책 위반 혹은 의심 정황에 대한 보고와 대응을 포함한 본 정책을 준수하고, 널리 알리며 이행할 책무를 가진다.
- ② 아동안전보호정책 담당자는 지리적 위치 혹은 사업수행조직 단위로 선임한다. 아동안전보호정책 담당자는 정책 위반 사항 또는 불만 접수를 담당하고 본 정책 교육과 이행을 지원한다.
- ③ 직책자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직무기술서에 “아동안전보호”를 포함한다. 이는 본 정책 위반 혹은 의심 정황, 불만을 절차에 따라 보고하는 것과 상급자로서 보고된 위반 사례에 대한 대응과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다.
- ④ 모든 법인 및 그 산하시설의 직원과 기관을 대표하는 관련자, 협력기관 직원은 본 정책 위반 혹은 의심 정황에 대한 보고 절차 및/또는 접수 담당자인 “아동안전보호정책 담당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어야 한다.

**제26조(아동학대 또는 성 착취 의심 사건 대응 원칙과 실행)**

- ① 아동 성 착취와 아동학대 의심 정황 혹은 혐의에 대응하는 직원은 관련분야 최고 수준에 부합하는 훈련과 지침을 받는다. 이를 통해 학대피해(의심)아동으로부터 온전한 반응을 이끌어내고 아동에게 2차 피해를 주거나 가중시키지 않도록 한다. 모든 대응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 아동과 증인(혹은 신고자)의 안전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그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신체적, 심리적 건강과 안녕을 도모하며, 비밀유지, 평등과 법에 호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 ② 직원은 본 정책 위반 혹은 의심 정황 조사 및/또는 후속, 외부 조사 과정에 협조할 때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과정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직원은 모든 내부 또는 외부 조사에 협력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법인은 아동보호전문가와 협력하여 외부 조사 협력에 대한 승인 절차와 협력 절차를 마련하며, 제17조 제2항에 따른 아동안전보호체계보고서에 명시된 절차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외부 조사에 대한 협력 수준은 학대피해(의심)아동에 대한 안전과 보호 수준에 따라 결정한다.
- ③ 모든 본 정책 위반 혹은 의심 정황을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사한다. 직원 또는 관련자가 사임하거나 고용 중단 혹은 협업이 중단된 경우라도 사건 조사는 계속되어야 하며 조사 결과를 반드시 도출한다.
- ④ 아동학대 또는 착취에 대한 조사를 종료할 때 조사결과를 명확히 기록하고, 법적으로 가능한 경우 평판조회서에 해당자가 아동에게 해를 끼치거나 아동을 위험에 처하게 한 이력이 있음을 정보로 제공한다.

**제27조(사건에 관한 대응, 관리 및 학습을 위한 운영관리체계)**

- ① 운영관리체계를 통해 아동안전보호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아동안전보호를 위한 적절하고 필수적인 조치를 취하며, 아동안전보호를 위한 적절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춘다.
- ② 아동에게 안전한 사업기획과 실행, 기관운영 및 정책개선활동 등 법인의 활동 전반에 보고된 사건들에 대한 교훈이 활용되도록 한다.

**부 칙**

본 정책은 2019. 6. 19. 제56차 정기이사회에서 개정하고, 2019. 6.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22년 2월 9일 제69차 임시이사회 의결을 거쳐, 2022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